

특강 2

한국식품영양학회
원고('01. 7. 12.)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대책

2001. 7. 12.

농 립 부

02-500-1938 행정사무관 강형석(smiler@maf.go.kr)
02-500-1939 수의주사 조현호(john@maf.go.kr)

- 목 차 -

1. 축산물가공처리법령 현황
2. 가축사육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 가. 사료의 안전관리
 - 나.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3. 도축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 가. 위생관리체계
 - 나. 도축장시설현대화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
4.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
 - 가. 작업장 시설기준 강화
 - 나. 선진국 위생관리기법 강화
 - 다. 잔류물질 및 미생물 모니터링 운용
 - 라. 위생 지도·감독 강화
5. 축산물 보관·운반·판매 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6. 축산물위생감시
 - 가. 기본방향
 - 나. 유통축산물 관리강화
 - 다.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활동
 - 라.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 마. 기동단속반 운영
7. 원유검사공영화
8. 축산물 위생검사 예산 지원
9. 축산물 작업장 HACCP 추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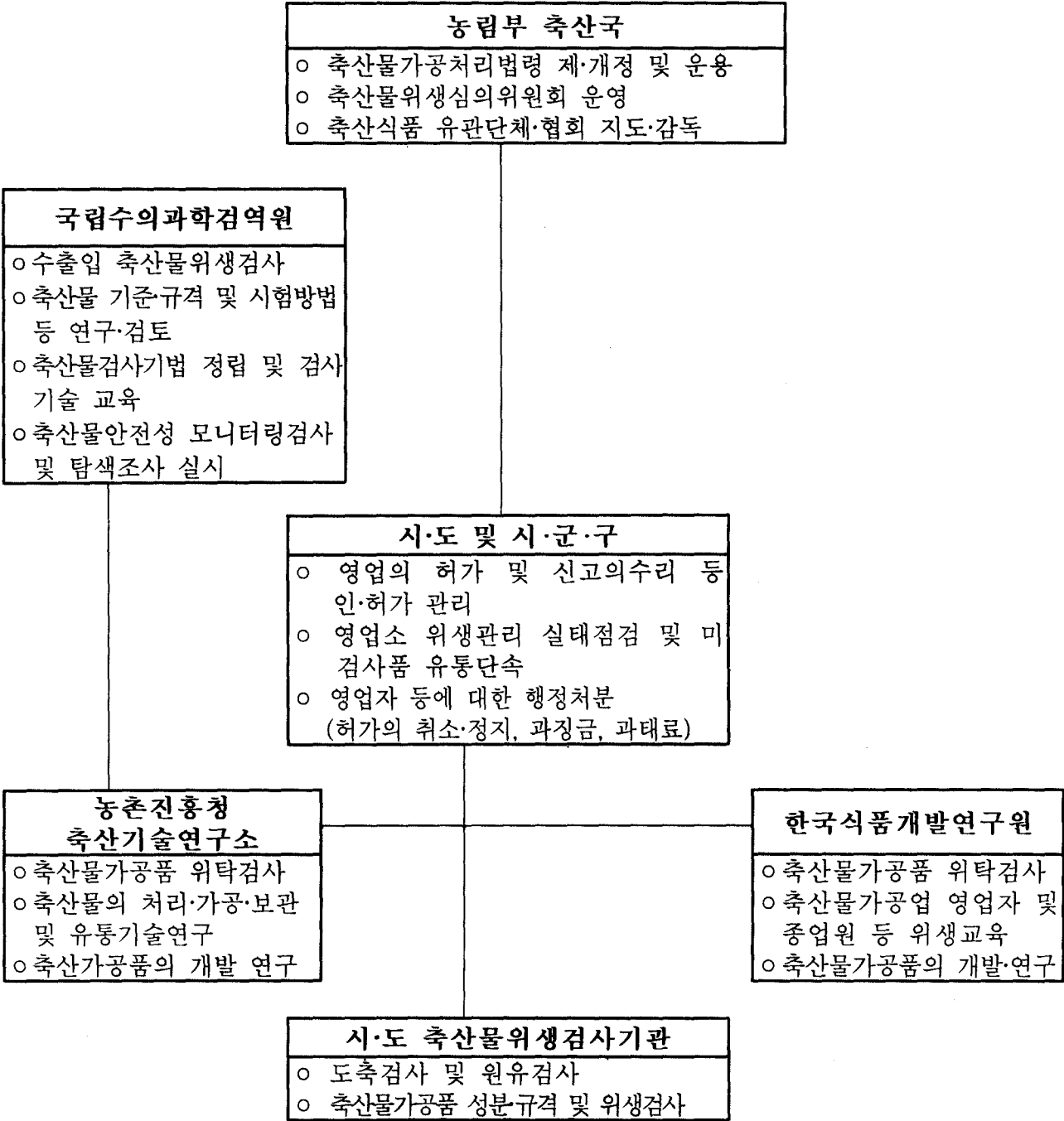
1. 축산물가공처리법령 현황

- '97년 제185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7년 11월 1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참석의원 158명중 찬성 90명(반대 21, 기권 47)으로 심의·의결된 후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 '97년 12월 13일 공포
 - '98. 6. 14일 시행
 - 동 법 시행령 '98. 6. 20
 - 동 법 시행규칙은 '98. 7. 3일 공포·시행

- '85. 7. 1일 축산식품 가공업무가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에서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소관으로 이관 후 13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환원.
즉 '85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된 축산물가공업 이외에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사항으로 축산물의 일원화

-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화란등)들과 같이 농장부터 식탁까지 (Farm to Table)일관된 위생관리를 필요로 하는 축산식품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관된 축산식품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 계기가 마련됨

축산식품 관리업무 체계도



2. 가축 사육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가. 사료의 안전관리

□ 자가품질검사 시설 확보(사료관리법 제15조)

-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생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품질을 검사하여야 함

□ 사료성분등록(사료관리법 제12조)

-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종류·성분·성분량에 관한 사항을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사료의 공정규격설정 운용(사료관리법 제11조)

- 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정성관리에 필요한 사료별 성분 및 성분량, 성분규격, 보존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사료내 유해미생물 오염, 부패도 측정, 요소 혼입, 살모넬라균 및 약품첨가사료의 제조와 관리, 다른 단미사료 혼합금지 등 사료의 표준분석방법 설정, 미량첨가사료의 공정서

□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의무표시(사료관리법 제13조)

-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등록사항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약품첨가, 제조일자,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유해사료 범위설정운용(사료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 유해물질 허용기준설정(8종)
 - 비소, 불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셀레늄, 아플라톡신 B1
- 유해사료는 제조·수입·판매를 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유해사료 판정 시에는 폐기·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설정 운용(농림부 고시 제1996-3호)

- 잔류농약 17종, 동물용의약품 59종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운용

□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 사용기준 운용(검역원고시 제 2000-10호)

-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 및 항균제의 사용기준 설정
 - 축종별, 규격별로 첨가할 수 있는 약품품목과 첨가량기준을 설정

□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사료관리법 제17조, 제31조)

- 사료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치
 - 영업정지 6개월이내, 과징금부과 1,000만원이내

□ 수입신고 대상 사료를 대폭 확대하여 근본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 원료의 도입차단

- 일부 보조사료에 대하여 수입신고토록 하던 것을 단미사료로 확대하여 안전성 관리 강화
 - 수입신고대상 사료 : ('98) - → ('99) 133 → ('00) 145개품목
- 미량광물질을 통관전에 신고토록 함
 - 안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미량광물질은 통관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세관장확인품목으로 지정(관세청고시, '00.9.25)

□ 사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강화(현재 국회심의중)

- 유해사료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이 허용치이상 포함된 경우도 포함
- 안전성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사료안전 관리인을 의무 배치
- 사료에 다량 첨가 또는 함유시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질에 대한 첨가량 또는 함유량을 제한
- 사료의 제조에서 유통의 전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제조업체에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GMP & HACCP)을 도입함

나.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관리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고시

- 항생물질 등 65개 물질에 대한 대상동물, 용법, 용량, 휴약기간, 사용자 준수사항 등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축산물내 유해물질잔류 방지

□ “주의 동물용 의약품”을 지정·운용토록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97.5.6)

- 가축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항생제, 홀몬제 등에 대한 취급요령 규정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지침” 개정('00. 3. 25.)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는 2001년 12. 31일까지 「우수동물약품 품질관리기준」(KGMP)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제조업체 81개소중 14개소 지정)

3. 도축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가. 위생관리체계

- 도축장의 설치·운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도축장 위생지도·감독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정부검사원 또는 도축장 소속 자체검사원이 담당.
- 도축장 및 집유장에 검사보조원제도를 도입하여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보조토록 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 강화
- 도축장내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의무화

나.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

□ ('91.~'96.) 도축장 89개소에 도축시설현대화 자금 38,786백만원 지원

□ 소·돼지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정비 추진

- ('77.) 515개소 → ('94.) 160개소 → ('98.) 109개소 → ('00. 12.) 112개소
- '97.12.31. 간이도축장 폐쇄
 - 전체 35개 간이도축장중 도서·벽지 및 육가공장 부설 6개소 제외한 29개 도축장을 폐쇄 또는 시설현대화로 일반도축장으로 전환
 - ※ 가금류 도축장 : 61개소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설치로 축산물위생수준 향상

-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유통체계 확립
 - 지육 → 부분육(Box Meat) } ⇒ 브랜드육
 - 냉동육 → 냉장육
- 가축의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일괄처리하는 LPC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위생도축·유통의 선도적 역할 주도
 - 2002년부터 전체 도축량의 30%수준 위생도축 수출 및 국내공급 목표
- ('96.) 2개소 → ('98.) 6개소 → ('01.) 9개소

4.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

가. 축산물작업장 시설기준 강화

□ '97.12.13.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 “별표10. 업종별 시설기준”에 선진국수준의 도축장 시설기준 반영

- 도축장 시설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준으로 상향
- 도축장 시설기준을 우수제조관리(GMP) 수준으로 상향

□ 도축장에 효율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HACCP 시설자금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시설·장비 등 10종류를 선정하고 연도별로 도축장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 지원업체수(50개소) : ('99.) 10개소 → ('00.) 15 → ('01.) 15 → ('02.) 10

나. 선진적 위생관리기법 도입 적용

□ HACCP 제도 도입·적용

- 축산물 생산시 HACCP 적용으로 공중위생상의 위해요소를 미리 파악·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관리 체계 구축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시행
 - 도축장 : HACCP 시행 첫 연도로 15개 도축장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 축산물가공장 : 유가공장 및 육가공장중 HACCP 적용품목 및 적용업소 확대
 - HACCP 적용업소 : ('99.)28개소 → ('00.) 31
 - HACCP 적용품목 확대 : ('99.) 6개 품목류 → ('00.) 8 → ('01.) 13
 - HACCP 적용작업장의 적용품목 확대 : ('99) 1개소 1품목 → ('00) 1개소 다품목축산물 생산시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적용

- 축산물작업장은 당해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작업시 적용 의무화
 - 동기준에는 작업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 오염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며,
 - 작업장에서 종업원, 검사원 등 관계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내용 명기
- 모든 작업장은 동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자는 매일 점검하고 점검일지 기록

□ 축산물작업장 "위생표준운용요령(SSOP) " 운용 감독강화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축산물작업장에 준수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SSOP에 대한 작업장 운용실태 조사 및 미흡 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완기시
- 축산물 회수체계(Recall) 확립
 - "유해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00. 3.17)을 제정하여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세부적인 회수체계 확립으로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축산물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위생SOP) 수립·시행으로 공중위생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발생시 긴급대처체계 확립(9월)

다. 전국적인 잔류물질 및 미생물 모니터링 운용

□ 개 요

- 관련규정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1-5호; '01.2.8) 및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1-6호; '01.2.8)
- 목 적
 - 식육생산단계에서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증진
 - 도축장에서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축장 위생관리실시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국내산 식육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수입산 식육 및 국내산 식육(탐색조사실시)

□ 기본방향

- 검사대상물질별·식육종류별 오염특성을 고려하여 검사체계 과학화·선진화
 - 호르몬제는 잔류위험이 높은 소고기만 검사하고, 농약은 잔류위험도가 낮은 닭고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물질(113종)에 대한 검사 실시
- 오염사례검출시 위생관리강화
 - 잔류물질 : 출하농장을 추적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출하하는 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실시
 - 미생물 : 권장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위생관리강화 및 점검 실시

□ 주요 검사내용

- 검사건수
 - 유해잔류물질(98,918건) : 간이정성 92,950 정밀정량 5,448 탐색 520
 - 미생물(111,930건) : 쇠고기 42,309 돼지고기 44,670 양(산양)고기 576 닭고기 22,188 오리고기 2,187
- 검사대상
 - 간이정성검사 및 정밀정량검사 대상물질(73종)

- 항생물질 20 합성항균제 19 농약 32 호르몬 2
- 국내 식품공전상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물질(113종)중 간이정성 및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물질에 대하여는 탐색조사 실시
 - 미생물(3종)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 검사기준은 작업장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체작업장의 90%이상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 일반세균수 : ('99)500만 cfu/ml,cm² ⇒ ('00)100만 ⇒ ('01)10만

라. 위생 지도·감독 강화

□ 도축장 위생실태 현지점검 강화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도축시설기준 및 위생관리내용 부합여부 현지점검
 - '99년 농림부, 검역원 및 시·도에서 총 5회 현지점검 실시
 -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도축장 7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
 - '00. 9월기준 검역원 및 시·도에서 총 4회 현지점검 실시
 -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도축장 행정처분 조치
- 도축장에 대한 위생지도·감독 및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도축시설 개선 및 도축위생수준 향상 유도

□ 육류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축산물 명예감시원(758명)을 '00. 12월말까지 1,000명으로 확대, 활성화 운영수당 지급(30천원/일일)
- 부정축산물 신고 센타 설치·운영, 신고 및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쇠고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한우고기와 젓소 및 수입육과의 유전자(DNA) 감별법 개발·현장 적용

5. 축산물 보관·운반·판매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 식육유통 관련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영업허가업종 :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 영업신고업종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보관업 위생관리

-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냉장·냉동 시설, 작업장 바닥 내수처리, 방충·방서시설 등 규정
-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준수 의무화
 -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위생관리기준(SSOP)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

□ 축산물운반업 위생관리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축산물의 위생적인 운반을 위한 운반 시설, 세차시설, 차고 및 영업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
 - 축산물운반차량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구비
 -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지육현수시설 설비
- 축산물영업자의 준수사항
 -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수송 금지
 - 운반차량 수시 세척·소독 실시
 - 지육은 매단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우지육은 포장상태로 운반 권장
 - 식육운반시 냉장 또는 냉동상태 유지

□ 축산물판매업 위생관리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규정
 - 축산물판매업소에 냉장·냉동시설 구비 등 규정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규정
 -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
 - 식육 냉장 또는 냉동상태 보관하고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방치 금지
 -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위생관리기준(SSOP)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

□ Cold Chain System 구축

- 도축·가공·운송·보관·판매시 냉장온도(10℃이하)를 유지토록 하고, 유통단계별 이동시간을 최소화

6. 축산물 위생감시

가. 기본방향

□ 위해축산물의 점검강화

- 축산물의 안전성확보 강화
 - 위생관리기준(SSOP) 준수 여부 확인 및 HACCP 지정 작업장에 대하여는 운용실태 확인점검
 - 축산물가공품의 수거검사로 사후감시 강화
 - 보관·운반·판매 축산물에 대한 단속 강화
-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단속강화
 - 국내산 및 수입식육의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검역원의 중앙위생감시 강화
 - 검역원(본원)
 - 전국적인 위해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 중앙위생감시요원 및 시·도 위생감시 담당자들의 교육
 - 검역원(각지원)
 - 일상적인 위생감시 활동
 - 소비자 등 신고 및 고발민원 처리

□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 최신 기술·정보에 바탕을 둔 축산물의 안전관리

□ 홍보활동 강화

-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제고 및 신뢰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단속결과 농림부 홈페이지 게재, 일반언론공표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문제업소 중심의 지도단속·강화

- 시·도에서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영업장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되, 과거 위반사항 업소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다만, 처

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유통축산물 관리강화

□ 축산물의 수거검사 강화

- 지역별·계절별 성수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수거검사 실시
- 재래시장·영세판매업소 등 유통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지도·점검
- 수거검사 물량

계	식육·원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문제축산물
5,880	1,110	1,710	2,130	310	620

□ 수입축산물 관리강화

- 보관상태, 한글표시사항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유통기한 자율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유통기한 자율화에 따라 유통기한을 연장한 제품에 대하여 중점 수거검사

□ 민간감시활동의 활성화 유도

- 농림부 및 시·도(시·군·구)와 소비자 보호단체가 연계하여 합동단속 등 감시 추진
- 부정·불량축산물의 신고 활성화

다.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활동

- 여름철('01. 7월~8월)에 변질되기 쉽거나 수요가 많은 축산물에 대한 특별위생관리 실시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여름철 위생관리 철저
- 축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시, 설날 및 추석절 대비 선물용 등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로 축산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 공급

라.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 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 구성 :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
- 주요 상담내용
 - 축산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상담 및 안내
 - 축산물의 위해요소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 축산물의 안전성관련 제도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접수

□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 운영

- 구성 : 농림부(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
- 운영
 - 고발내용은 즉시 조사처리후 고발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익명의 고발내용에 대하여는 정보사항으로 처리하여 추후 단속에 참고
 - 농림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고발사항 협조처리 강화

마. 기동단속반 운영

- 목 적 : 품목허가제 폐지등 자율성 확대를 틈탄 부정·불량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

□ 설치 및 운영

- 기동단속반은 검역원 및 시·도 책임하에 설치·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시·도(시·군·구)의 인력을 차출하여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
- 시·도(시·군·구)는 자체 실정에 따라 설치·운영

□ 주요 업무

- 관내 무허가축산물 및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거·단속
- 위해우려가 높은 축산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점검
-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조사 및 단속
- 언론 등 보도사항에 대한 관내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
- 타기관에서 이송된 정보사항에 대한 조사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행

7. 원유검사공영화

□ 원유검사공영화 제도 정착

- 유대지급과 관련되는 체세포수, 세균수 및 유지방에 대하여 시도 원유검사실 시기관에서 검사 실시
- 원유검사실시기관에 대한 장비현대화사업 예산 및 검사보조원 지원
 - 원유검사장비예산 : 체세포수검사기 등 7종 13점 1,154백만원
 - 기관별 검사보조원 각 2명 지원
- '00. 12. 기준 90%가 원유검사공영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01. 상반기까지 공영화제도 완전정착
 - 기능성 우유 등 부분적으로 원유검사공영화에 참여하지 않는 원유에 대하여도 공영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
-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인력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검사위탁을 신중히 검토

8. 축산물 위생검사관련 예산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04.
검사장비	3,000	3,375	3,140	매년 4,000
검사재료비	300	330	610	매년 1,000
계	3,300	3,675	3,750	

□ 축산물검사 장비 지원(67종 200점)

- 장비내역
 - 잔류물질검사기 등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장비 12종 31점 1,505 백만원
 - 가공품성분검사기 등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16종 35점 1,020 백만원
 - 체세포수 검사기 등 원유검사 장비 7종 13점 1,154 백만원
 - 미생물분리동정기 등 식육중 미생물검사 장비 17종 74점 1,506 백만원
 - 냉동조직절편기 등 기타 검사장비 15종 47점 1,095 백만원

□ 검사재료비 지원(610백만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인 및 검인용 색소 구입비 지원
 - 검사대상 : 도축되는 소, 돼지 등
 - 사업량 : 소 1백만두, 돼지 12백만두
- 원유검사공영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및 검사장비 검증
 - 검사대상 : 원유중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유지방)
 - 사업량 : 약 1,560천건
-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 검사대상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 사업량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약 10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요령(농림부 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등
 - 사업량 : 11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식육중 미생물 검사 요령(농림부 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 또는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 검사대상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사업량 : 5,880건
 - 검사내용 : 검사기준은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 고시) 규정에
따르며, 2001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9. 축산물작업장 HACCP 추진대책

I. 개요

서론

국내 도축장은 년차별 도축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00. 7~'03. 7) HACCP 을 의무적용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에는 36개 중규모 도축장이 HACCP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간점검 결과 HACCP 인증 추진이 부진한 바, 인증추진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미인증업체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정책시행을 통해 HACCP 조기정착시키고자 함.

『174개 국내 도축장 중 작년(15개소) 및 금년 HACCP인증 대상업체(36개소)가 도축물량의 약80%를 점유하므로 이들 업체의 HACCP추진이 HACCP정착의 관건임』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개념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이 위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발생가능한 위해를 분석하여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2. HACCP 도입 추진 배경

□ 최종제품의 검사로는 안전성 확보 및 다양한 위해 대응에 한계

- 소득증가 및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전 축산물 욕구 증대
 - 식품유래질병(식중독) 발생현황 : ('98)4,577건 ('99)7,764건
- 생물학적·화학적 및 불명확한 위해 요소의 증가
 - 병원성미생물, 다이옥신·잔류물질·환경호르몬 등

- 축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국제기준과 조화 및 국내 축산업 보호
 - SPS 협정이후 각 국은 교역식품에 대해 Codex의 HACCP적용 요구
 - 미국·일본·EU 등은 HACCP 적용 생산 축산물에 대해 수입 허용
 - EU조사단은 국내 닭도축장의 위생미흡 및 HACCP 미적용 이유로 수입불허('98)
 - 구제역 청정 선언후 대일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해 HACCP 적용은 필수
 -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국민건강 위해 HACCP 비적용 축산물 수입규제 가능
 - 선진국이 축산물 수출을 위해 국내의 위생문제 거론시 축산업 타격 우려

II. 국내 HACCP제도 도입 및 추진 대책

1. 관계법령 정비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 도입('97.12)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원료관리·처리·가공·유통 등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의 축산물혼입 및 오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적용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위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등)
 - 적용대상 :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 영업자는 Codex 지침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영
 - 적용품목·시기·방법 등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토록 위임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위생관리기준(SSOP)도입('97.12)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8조(위생관리기준)
 - 작업전·후 및 작업중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위생 수칙
 - 위생관리기준과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에 위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6조(위생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 위생관리기준과 적용대상(도축장,가공장)

※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정 (농림부 고시, 제1998-49호 '98.8)

- 목적 : HACCP 적용대상 품목·적용시기·시행방법 등 규정
- 시기 - 도축장 : 도축실적에 따라 년차적으로 의무 적용('00.7.1 - '03.7.1)
 - 축산물가공장 : 자율적용
 - 식육가공장(햄·소시지류)유가공장(우유류·발효유류·자연치즈·가공치즈)
 - 대상확대('00.2) :가공유류 및 버터류
 - 수출용 축산물 가공·처리 작업장 : 수출상대국 요구시 적용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중)

- HACCP 적용품목(포장육등) 확대 포함 등

2. HACCP 인증 지원체계 구축

□ 도축장 HACCP 적용모델 시범사업 실시 ('97-'98)

- 소·돼지·닭 도축장의 HACCP적용 모델 연구
 - 대상 : 축협김제육가공장, 한냉중부공장, 체리부로식품

□ “HACCP 적용실태조사반” 구성 (검역원) ('98.9)

- 구성 : 검역원, 한식연 등 유관기관의 축산물위생전문가
- 업무 : HACCP 지정요청시 당해업체의 HACCP 적용실태 현지조사

□ “도축장 HACCP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98.10~'99.6)

- 구성 : 농림부, 시·도, 검역원, 축기연, 한식연 등의 HACCP 전문가(35명)
- 목적 - HACCP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별 준비사항 등 사전준비
 - HACCP 담당자의 HACCP 이해 및 운용능력 제고
 - “도축장 HACCP 실행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업체에 제공

□ 농장에서 최종판매까지 HACCP적용 방안 종합 연구 ('99-'00)

-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에 따른 HACCP제도 현장적용기법 개발
 - 소·돼지·닭 사육농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방안
 - 도축·가공·판매 작업장의 SSOP모델 및 도축·가공장의 CCP전산화모델 개발
- 농림기술연구과제로 서울대, 강원대, 축기연, 대한제당 등 산학합동연구

□ 도축장 HACCP 시행추진반(Task Force) 운영 ('00.1~'00.6)

- HACCP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자문·지원 및 SSOP 지도·감독
 - 대상 : '00. 7. 1부터 HACCP제도 의무 적용 도축장(15개)

□ 정부 등 유관기관에 HACCP 전문가 육성

- 농림부, 검역원, 시·도 등의 위생담당부서에 HACCP 담당자 지정
 - 시·도 2명, 검역원 5명, 한식연 3명 등 총 50여명
- HACCP 특별교육·해외연수 실시('00.3~'01.2, 4회)

□ 국가전문행정연수원(농업연수부)에 HACCP 전문과정 신규개설

- 시·도 HACCP 담당자 및 도축장 영업자 등 대상(5.4 - 5.8)

□ HACCP 컨설팅 기관 지정

- 교육기관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수의사회 (3개)
 - 도축장 컨설팅 및 축산단체 등 관계기관 교육

3. HACCP제도 교육·홍보

□ 시·도 HACCP 담당자 및 관련공무원 교육실시

- 검역원에서 시·도 HACCP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농업연수부 축산물위생반 교육과정 중 “HACCP 교육내용” 운영

□ HACCP 실시 기반조성 및 확산을 위한 관련업계 교육

- 검역원, 시·도 등에서 검사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실시

교육·홍보자료 발간 ('98-'99)

- 외국의 HACCP적용 사례, HACCP 해설 및 질의·응답 수록
 - HACCP관련규정 및 도축장내 적용(1권) 등 총 4권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 일간지, 전문지에 HACCP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 보도자료 5건, 전문지 광고 2회
- 수의사회지, 양돈진흥지 등 월간지에 HACCP 내용 게재
- 농림부 홈페이지 「열린농정」 HACCP 교육·홍보자료 게재(150회)

도축장 영업자에게 HACCP 의무적용 준비 철저 요청 ('00.6)

- HACCP제도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4. HACCP조기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도축장 위생시설자금 지원

- 도축장의 위생시설 구입,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 지원대상(50개소) : ('99)10 → ('00)15 → ('01)15 → ('02)10
 - 개소당 500백만원(축산발전기금 융자 350, 자담 150)
 - 지원조건 :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

도축장 HACCP 컨설팅비용 지원

- HACCP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실정에 맞는 효율적 HACCP 체계구축
 - 지원대상 : ('00) 15 → ('01) 15 → ('02) 20
 - 지원기준 : 개소당 10 백만원(보조70%, 자담 30%)
 - 컨설팅내용
 - 개별도축장에 적합한 HACCP관리기준서 개발 지원
 - 도축장 영업자,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
 - 도축장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개발 지원

Ⅲ. 도축장 HACCP 추진 현황

1. 도축장 HACCP추진 계획

시기	의무적용대상 (1일평균도축실적)		비고
'00.7.1 (15)	소(14)	○ 100두 이상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 도서지역제외
	돼지(14)	○ 1,000두 이상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닭(1)	○ 100,000수 이상 및 계열화업체	
'01.7.1 (36)	소(17)	○ 50두 ~ 100두 미만	○ 도서지역제외
	돼지(20)	○ 500두 ~ 1000두 미만	
	닭(5)	○ 50,000수 ~ 100,000수 미만	
'02.7.1	소	○ 30두 ~ 50두 미만	○ 도서지역제외
	돼지	○ 300두 ~ 500두 미만	
	닭	○ 30,000수 ~ 50,000수 미만	
'03.4.1	소	○ 30두 미만	○ 도서지역제외
	돼지	○ 300두 미만	
	닭	○ 30,000수 미만	

※ 도축장수('01.3) : 174개(포유류 : 113개소, 가금류 : 61개소)

2. '00.7.1 HACCP 의무적용 도축장 HACCP 추진현황

□ 대상 도축장 13개소 중 8개소 적용완료(62%)

- HACCP제도 인증 획득 도축장 : 한냉중부공장 등 8개소
 - 인증 획득 후 휴업 도축장 : 명신산업 등 1개소
- 심사 결과 보완 지시한 도축장 : 농협서울공판장 등 5개소
- 폐업 및 미가동 작업장 : (주)부천 등 2개소
 - 도축장 HACCP 의무적용 시기 3개월 유보('00.7.1⇒'00.10.1)
 - ☞ '00년 3월 구제역 발생 및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따른 경영악화 등

□ 도축장 HACCP 적용현황

(‘01.4.30현재)

구분	HACCP 인증업체	HACCP 미인증 업체	기타(인증)
도축장	한냉중부공장, 축협목우촌육가공장, 대상농장, 하림, 박달재한우마을, 안성축산진흥공사, 명신산업, 부산경남양돈조합김해축산물공판장 ⇒이상 8개소.	농협서울공판장 (주)신영축산(주)신호유통, 제주농협축산물공판장, 삼성식품(주) ⇒이상5개소	(주)롯데햄·우유, 농협목우촌계육공장, (주)화인코리아 성화식품 ⇒ 이상 4개소
비고	○(주)부천-폐업 ○(주)동아축산-미가동 ⇒이상2개소	○ HACCP보완 중	○’00. 7월 대상 아님

3. ‘01.7.1 HACCP의무적용 도축장 HACCP 추진현황

□ HACCP 추진현황

- 보완없이 ‘01. 7. 1 HACCP 적용 가능 업체 : 없음
- 보완 후 ‘01. 7. 1 HACCP 적용 가능 업체 : 10개소
- ‘01. 7. 1 HACCP 적용 어려운 업체 : 25개소

IV. HACCP 추진상 문제점

1. 도축장내 HACCP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반 열악

□ 작업장의 HACCP적용을 위한 기반시설 미비.

- 시설기준은 HACCP 추진상의 H/W측면의 전제요건임.
 - 대부분의 도축장이 법령상의 시설기준 미충족.
 - 영세도축장의 자동화 시설 및 위생처리 설비 부족.

□ 영업자 및 종업원의 작업위생 소홀

- 종업원의 위생적 작업은 HACCP 추진상 S/W측면의 전제조건임.
 - 자체위생관리조직이 없으며 비위생적 작업
 - 축산물 생산·가공시 위생관리기준(SSOP) 준수 미흡

□ HACCP체계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 부족

- HACCP은 자율적 위생관리체계로서 영업자의 의지가 성공의 관건.
 - 시설미비 등에 따른 초기 투자 및 생산 코스트 증가로 외면
 - 현재 우리의 도축장 여건상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 존재

2. 도축장의 자율적 HACCP 정착화를 위한 유통환경 미성숙

□ 전근대적 유통구조가 HACCP 자율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지육유통 비율이 높아 소비단계에서 HACCP 생산품의 비교우위 상실
 - 도축장⇒정육점:(소)64.7%(돼지)42.9%, 도축장⇒가공장:(소)8.5%(돼지)41.1%
- HACCP 생산품의 비교우위 상실에 의한 HACCP 미적용 생산품과의 동질화
 - 결국, 도축업 영업자의 자율에 의한 HACCP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됨

□ 도축장 HACCP 의무적용 후 전반적인 정착화에는 한계 노출

- 도축·유통상 체계적인 HACCP 미확립으로 생산·소비의 악순환 발생 가능
 - 도축업자 : 지육유통⇒(비)HACCP품간 차별화 미흡⇒HACCP 의지퇴색
 - 소비자 : HACCP품 식별곤란⇒가격에 의한 구매⇒HACCP품 외면
 - 가공품 범위 확대, 포장육 HACCP 의무화·포장육 유통확대 필요

□ 유통과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위생적인 유통장치 미비

- HACCP 정착위해 포장유통, Cold Chain System등이 병행 필요.
 - 현재는 지육유통의 비율이 높고, 냉장유통체계도 미흡한 실정.

3. 기타 문제점

도축장내 HACCP추진 전문인력 부족

- HACCP은 과학적·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전문인력 필요
 - 시·도, 검역원 HACCP전문가 부족으로 자문·검증에 한계
 - 작업장의 HACCP 운영 및 검증 인력 부족

소비자의 HACCP제품에 대한 이해 및 선호도 부족

- HACCP제도 이해부족 및 가격에 의한 축산물구입 패턴에 기인

정부·유관기관 및 업계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부족 등

- 정부의 HACCP 추진기관간 정보교환 등 공조 부족
 -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의 HACCP 표준화 미흡
 - HACCP에 대한 홍보 등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미흡
- 정부,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간의 의사소통 수단 부재
 - HACCP 추진상 문제점 등 해결을 위한 협의수단 부족.

V. 도축장 HACCP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1. 도축장 HACCP 추진 전제요건 및 실태평가

전제요건

구 분	내 용
인증요건	○ 위생시설·설비(시설기준) 및 위생적 작업(SSOP)
정착요건	○ 가공·유통단계의 위생적 처리(HACCP적용) ○ HACCP적용 축산물의 소비단계에서 차별화 ○ 가공품범위 확대 및 포장품 유통 확대

□ 도축장 실태 및 평가

- (인증요건) 도축장의 영세성·시설 노후화 및 위생의식 결여

↓
HACCP 인증획득에 예로

- (정착요건) 가공·유통의 전근대성, HACCP 이해부족

↓
인증업체의 HACCP 정착에 예로

- 현재의 도축장 실태 및 HACCP 추진 상황을 감안하면 현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도축장의 HACCP 인증 획득 및 국내 정착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는 바, HACCP 추진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및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미인증 업체는 지도·감독을 통한 적극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차별화정책을 통한 조기정착 유도.

2. 정책의 기본방향

□ 도축장내 HACCP 의무적용은 일정에 의거 정상 추진

- HACCP 추진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 HACCP인증 미획득 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 HACCP 인증유도 및 정착화 위한 지원대책 강화

-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검사·단속 강화

□ HACCP 이해 및 차별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강화

-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선호하도록 차별화

3. HACCP 정착시 기대효과

□ 식품유래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생산·가공·유통단계에 HACCP 도입시 식품유래 질병에 의한 손실 최소화
 - 미국의 경우 매년 식품유래질병이 76백만건발생, 5000여명 사망
 - 알려진 원인은 HACCP가 주로 다루는 생물학적 위해가 90%.

- 원인불명이 62백만건이며 3,200명의 사망 유발
- 미국의 경우 HACCP 도입시 매년 약 990 ~ 3,700백만달러의 이익 추정
 - 시행 및 유지비용은 매년 약180 ~ 200백만달러 예상

□ 국내 축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 국내 축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는 위생적인 처리가 선행되어야 함
 - 수입축산물 시장 진입 및 점유확대 위해 국내 축산물 위생문제 거론 예상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

- HACCP 정착시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마진 축소 및 위해 노출 가능성 감소
 - 가공품 범위 확대 및 포장육에 대한 HACCP 의무화 필요

VI. 세부추진계획

1. 도축장별 HACCP 인증획득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 HACCP 인증추진을 위한 위생시설자금 지속 지원

< 『축산위생시설(HACCP)사업』에 의거 지속 시행('02)>

- 대 상 : HACCP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500백만원 기준(융자70%)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
- 사업량 : 10개소
- 예산액 : 5,250백만원(축발기금-HACCP시설자금)
- ※ HACCP준비 및 시설개보수계획 등에 의거한 심사강화 예정

□ HACCP 인증추진 희망업체에 대한 컨설팅 자금 지속 지원

< 『위생시설 컨설팅(HACCP) 사업』에 의거 지속 시행('02)>

- 대 상 : HACCP 컨설팅 자금 신청업체 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당 10백만원기준(보조 70%)
- 사업량 : 20개소
- 예산액 : 140백만원

□ 3개 이상 도축장 통합시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 대 상 : 기존의 3개이상 도축장을 통합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지원기준 : 통합업체당 12,500백만원 기준(용자:8,750, 자담 3,750백만원)

□ HACCP 인증 지원을 위한 도축세 감면 유도(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도축세 감면 등 우대조치 시행 권고
-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도축세를 대폭감면(50%)토록 유도(5.19)

□ HACCP 인증 도축장 및 축산물에 대한 우대 강화

- HACCP 지정작업장에 한하여 수출작업장으로 승인
- 병원성 미생물 검사 완화 : 4회/월 → 1회/월
- 종업원 등의 위생 교육 완화
 - 영업자 : HACCP 교육과정 수료시 위생교육에 갈음.
 - 자체검사원·종업원 : 전문가의 HACCP 순회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갈음

2. HACCP 미인증 도축장에 대한 제재강화

□ 인증 미획득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축산물가공처리법령개정)

-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 영업자 : 과태료 30만원
- (개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 영업자
 - 인증미획득 :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신설 (검토중)
 - 기타사항미준수 : 과태료 인상 등 제재강화 (검토중)
 - 미생물검사기준위반 :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신설 (검토중)

□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에 의거한 감독 강화

- HACCP의 토대인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이행 교차점검
 - 검역원, 시·도 등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후 점검 실시(5.21-5.26)
 - 시설기준 등 위반업체는 시·도에 통보하여 자체 시정토록 조치
- 1차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상태 확인을 위한 교차점검 실시(10월중)
 - 10월중 시설기준등 위반업체의 시정 실태 재점검
- 인증 미획득 사실 및 미생물검사 위반자료 등 공개
 - 농림부 및 검역원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게재

□ 미생물검사 기준 위반시 처벌(축산물가공처리법령개정 검토중)

- 지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근거마련(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 일반세균(10^5 cfu이하), 살모넬라균(연속2회 불검출)
 - 대장균수(쇠고기·양고기- 10^2 cfu이하, 기타식육- 10^4 cfu이하)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 위반시 처벌 강화
 -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 수단 강화

3. HACCP 인증 및 정착을 위한 유통 환경 조성

□ HACCP 제품 소비촉진 유도

- 군납, 학교급식, 단체급식 업체 등이 HACCP 축산물 사용토록 유도.
 -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홍보 및 지원 요청

□ 포장육 및 기타 가공품의 HACCP 생산품 사용 유도

- HACCP 적용대상품목에 포장육을 추가(HACCP고시 개정중)
 - HACCP 포장육은 HACCP도축장 생산지육을 사용토록 의무화
- 장기적으로 포장육 및 기타 가공품에 대해 HACCP 적용 의무화 검토
 - 도축장 HACCP인증이 완료되는 2003년 7월 이후 적용 검토
 - 축산물 유통단계별 특성에 맞는 HACCP 적용모델 개발 추진

4. HACCP 이해 및 제품 차별화를 위한 홍보강화

□ HACCP인증품 차별화 위해 지육에 HACCP 인증마크 표시 추진

- 영업자가 출하되는 소·돼지 지육에 HACCP 인증마크 자율표시(5.17)

□ HACCP 홍보용 책자 작성·배포 및 소비자대상 순회교육 실시

- HACCP 이해 및 HACCP 축산물의 차별화 위한 홍보책자 작성
 - 목적 : HACCP의 이해 통한 HACCP 축산물 소비 유도
 - 내용 : HACCP 일반사항, HACCP 인증품 구매요령 등
 - 홍보방법 : 육가공장, 동사무소, 농협 등에 배포하여 시민이 열람토록 함
- HACCP 이해·홍보 및 정책설명을 위한 순회교육실시(6월중)
 - 시·도별로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를 대상 교육

-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HACCP품 우선사용 홍보 등**
 - 대상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등
 - 방법 : HACCP품 판매코너 마련 협조 요청 및 HACCP 인증품 우대
 - HACCP인증 도축장 생산품 판매 확인시 “HACCP 인증품 판매” 자을 광고
- **반상회보에 HACCP 홍보자료 게재 추진**
 - 홍보문안 작성 후 행자부에 협조 요청
- **TV, 신문 등을 통한 HACCP 홍보 지원**
 - 도축장 HACCP 기인증업체 합동으로 TV·신문 광고토록 유도
 - HACCP 제도 및 생산 축산물의 우수성 등
 - 필요시 유가공회사 등 HACCP 인증기관과도 연계 추진
 - 위생관리가 양호한 HACCP 도축장은 TV 방영추진을 통한 대민 접근
-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HACCP 홍보 협조 요청**
 - 소비자단체에 교육자료 제공하여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협조 요청
- **HACCP 이해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검역원 홈페이지에 HACCP 코너 별도마련
 - HACCP홍보자료, 최신정보, 질의·응답코너 등

5. 기타 : HACCP 지원체계 구축

- **HACCP 정착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간 공조체제 강화**
 - 정부의 HACCP 추진 관계기관간 공조 체계 구축
 - 공동홍보, 정보교환 등을 위한 상시연락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HACCP 추진 관계기관
- **HACCP 지역 전문가와 도축장 간 산·학·연 협력관계 구축**
 - 지역 연구기관·대학과 도축장의 자매결연 유도
 - HACCP 인증·사후관리 및 연구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유도
 - 도별 수의과대학, HACCP 연구기관 등 파악 후 결연 추진

□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운영 활성화 유도

- HACCP 인증 등 위생업무 활성화 및 자율적 추진 유도

□ HACCP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교육과정 체계화

- 농림부·검역원 : 선진국 HACCP 제도 및 HACCP 동향 연수
 - 선진국 HACCP 교육기관 및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획득
 - 선진국의 HACCP 적용사례 등 견학을 통한 현장 응용능력 배양
 - HACCP 의무적용 기간 중 미국·일본 등지의 담당부서 및 현장 방문
- 시·도 : 국내 교육과정을 통해 선진제도·현장경험 재교육
- 영업자·HACCP팀 : 현장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위주 실시
- 검사원 : HACCP 정책 및 작업장에서의 검증 및 감시업무 교육